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장애인자립지원과-13938 |
| 결재일자 | 2018.8.1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방침번호 | |

시 민

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주무관 | 장애인편의시설팀장 | 장애인자립지원과장 |
| | | |



2018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계획(안)

2018. 8.

복지본부
(장애인자립지원과)

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 계획

「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」를 현실에 맞는 지표수정 및 인증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함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추진경위

- '10. 5월 :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수립 시행
- '15. 6월 : 「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」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부분인증제 도입
- '10. 5월 :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수립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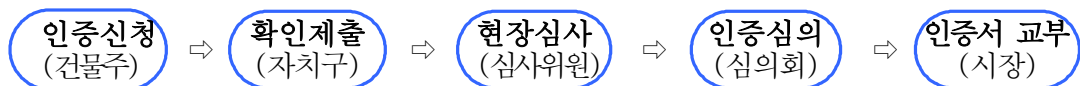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근거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(약칭 : 장애인등편의법)

□ 현 황

○ 사업개요

- 인증대상 : 민간 시설물(신축, 기존 건물), 전체, 부분인증
- 인증심사 :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(편의시설 시민추진단 전문위원)
- 인증기간 : 인증일로부터 5년
- 인증심사 :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(편의시설 시민추진단 전문위원)



- 인센티브 : 인증서 및 명판 교부(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)
- 소요예산 : 23,244천원

○ 추진실적

<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목표 및 실적 >

(단위:개)

| 연도별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
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목표(누계) | 5 | 5(10) | 5(15) | 5(20) | 10(30) | 10(40) | 10(50) | 10(60) | 40(134) |
| 실적(누계) | 1 | 4(5) | 10(15) | 10(25) | 5(30) | 9(39) | 21(60) | 34(94) | - |

□ 문 제 점

- 「장애인 등 편의법」 개정 및 현실여건에 맞는 인증 지표 변경 필요
 - 「장애인등 편의법」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미반영됨
: “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”이 폭 1.4미터 이상, 길이 1.8미터 이상으로 개정 전 내용임
 - 농아인은 핸드폰으로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영상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인증기준표에 화상전화기 항목이 있어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함.
- 서울형 인증 후 사후 관리 미흡
 - 2011년 이후 인증시설에 대해 점검 결과 5개소가 점자표기메뉴판 훼손 등 인증 당시 지표기준 미 준수
 -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없어 인증기간(5년) 만료 시설에 대한 재 인증 추진 안내 등 미비

< 인증 건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('18.6) >

(단위:개)

| 점검대상 | 점 검 결 과 | | 주요 지적사항 | 조치사항 |
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적 정 | 부 적정 | | |
| 93 | 78 | 15 | 장애인화장실 지표항목 불충족 점자표기 메뉴판(점자블록) 훼손 등 | 부적정 장애인편의시설 시정조치, 인증 취소 |

- 지속적인 인증건물 확대를 위한 인증대상 유인책 부족
 - 25개 자치구 중 서울형 인증제에 관심있는 자치구만 인증제 신청 ('16년 10개구, '17년 12개구)
 - 인증시설에 대한 시민 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(영업주)에 대한 혜택 부족

2

개 선 방 향

□ 인증대상 확대 및 재인증 추진으로 서울형인증제 확산 도모

○ 설계도면에 대한 예비인증제 도입

- 공사 후 신축시설에 대한 본인증 전에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도면 심사후 설계사에게 인증서 발급(붙임1)

○ 정기적 점검실시 및 만기 시설 재인증 추진

- 매년 정기점검으로 서울형 인증 건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
- 유효기간(5년) 만료 시설은 신규 인증신청 안내

□ 개정 법령 및 현실 여건에 맞는 인증지표로 개선

○ 「장애인등 편의법」 시행규칙상 개정된 화장실 대변기 확대 기준 적용

- 신축은 폭 1.6미터 이상, 깊이 2.0미터 이상

○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 항목 삭제

- 소규모 이용시설의 휠체어 사용자 통행로 확보
- 스마트폰으로 영상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화상전화기 삭제

※ 인증심사지표 붙임2

□ 자치구 관심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지표 적용

○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로 소관 자치구의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권고

○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여 공동협력사업에 지표화(2점)

3

세부 추진계획

- **설계 도면 예비인증제 및 인증 만료 시설 재인증 추진**
 - 시공전 설계도면에 대한 예비 인증 실시
 - 개별 시설 설계도면에 대해 시공전 심사하여 인증서 발급, 설계사의 자부심 부여와 본인증 사전절차로 본인증획득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 제공
 - 정기·수시 점검 실시 및 만기 시설 재인증 추진
 - 인증이후 매년 정기점검으로 편의시설 훼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인증 취소를 통해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위상 유지
 - 유효기간(5년) 만료 시설은 신규 인증지표 적용하여 재인증 유도

- **장애인화장실 기준 등 실제 적용가능하도록 인증지표 개선**
 - 「장애인등 편의법」 시행규칙상 개정된 화장실 대변기 확대바닥 기준 적용
 - 신축은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 폭 1.6미터 이상, 깊이 2.0미터 이상
 - 기존건물에 설치시 1.0미터 이상, 깊이 1.8미터 이상
 -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화상전화기 항목 삭제
 - 소매점, 약국, 음식점의 휠체어 사용자 통행로 확보
 - 농아인은 핸드폰으로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영상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 심사기준표에 화상전화기 항목 삭제

- **홍보강화 및 자치구 관심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지표 운영**
 -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장애인 관련 지표(2점) 부여 및 자치구의 편의 시설 설치 예산 지원 권고
 - 인증제 참여 유도 성공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로 자치구 적극 참여 유도
 - 인증시설 현판시 언론홍보로 서울형 자긍심 부여 및 건물주에 대한 표창(시장) 수여 추진

4

추진 일정

-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 안내 : '18. 8월 초
- 인증 신청 접수 : '18. 9월 초
-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: '18. 9월 중
- 인증건물 현판식 및 홍보 : '18. 10월

5

행정사항

- 소요 예산 : 23,244천원**
 - 인증서 인쇄 : 400,000원
 - 명판 제작 : 14,700,000원
 - 심사위원수당 : 7,200,000원
 - 150,000원×12명×4회(심사회의)
 - 기타 진행비(플랭카드, 다과비, 사무용품비 등) : 744,000원
- ※ 예산과목 : 장애인자립지원과,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, 사무관리비(201-01)
- 자치구**
 -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신청건에 대해 자체검토 후 시청으로 신청
 -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추진 건물에 대한 설치비 등 지원
 - 전년도 인증 건물 사후 점검(매년 실시)
- 서울시**
 - 자치구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 심사(인증심사위원회 구성)
 - ※ 시 편의시설 시민축진단 심사 지원
 - 현판식 등 언론보도
 - 인증 건물 사후 관리

붙임 1. 인증서(안) 1부.

2.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심사기준(안) 1부. 끝.